

# 다국적 기업의 세무계획에 대한 규제조치와 대처방안

김 성 은<sup>1)</sup>, 최 종 수<sup>2)</sup>

## A Study on the Counterplan for the Limitation aginst Multination's Tax Planning

SUNG-EUN KIM, JONG-SU CHOI

### Abstract

One of the most dramatic and significant events of recent years has bee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A major force underlying this world trend has been the rapid sustained growth of international business. In its traditional form of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its newer form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has become massive in scale and has come to exercise a major influence ov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This growth in business activity across national boundaries has brought with it many changes.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has confronted nationstates with local business units that are closely linked with operations lying outside the nations' local jurisdiction. As a result, nation-states have had to grapple with a wide range of new policy issues that are not satisfactorily covered by the traditional conceptual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 a framework primarily focused on controlling transfers of goods and money as they cross national borders.

Multinational, as compared with domestic, financial management involves

1) 한국해양대학원 부교수과 석사과정 졸업한 김은  
2) 한국해양대학원 국제세무학 강재학부 교수

new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new sources of risk, and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es and efficiencies. The new risks arise out fluctuations in foreign currency values, changes in tax liabilities as funds move a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the impact of national controls on financial flows. Especially, in a world of independent taxing authorities,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encounters and almost infinite variety of types of taxes, levels of tax burdens, tax incentives, patterns of tax administration, and possible overlaps in tax system. The tax planning is important in virtually all business decisions, and as tax systems are highly technical and change frequently, the enterprise needs the services of tax experts to anticipate tax burdens, minimize tax obligations within legal limits and supervise compliance. Therefore, tax planning is a complex and highly technical subject that require the input of tax exper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unterplan for the limitation against multination's tax planning. It begin with the search of multinational tax environment and tax planning, and then it illustrates legal limits against tax planning, such as foreign tax credit and treaty shopping and transfer pricing. finally, the study presents multination's counterplan as an analysis about the blind spot of limitation.

## 1. 서 론

한국계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생산, 판매, R&D 등의 최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이유는 이윤극대화에 있는 것이며, 이윤극대화의 목표에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국제조세면에서의 세무계획인 것이다. 세무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해외산업활동 및 과실송금을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면에서의 세무계획은 순수한 내국조세면에서의 세무계획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관련기업들이 사업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체계가 다르고, 세무계획에 대한 다양한 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제도를 극복하고, 조세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국제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계 기업은 역시 조세절감 노력은 하지만, 해외 경영 경험 및 기업의 규모면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관련된 행정부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미국 내 해상에 일부 과여야 할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세정이 미국내 현지법인의 이전가격조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한국계 현지 기업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세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한국계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환경과 세무계획

### 2.1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첫째, 국제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이 실정법상 실제 존재하는 단일 세부이 아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의 고유의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둘째, 국제조세는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서로 경합하는 대로 발생되는 조세이다. 또한 국제거래는 여러 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환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국제조세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되는 조세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이 2개국 이상에게 주어지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각국은 자국의 세법체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각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법체계의 상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양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각국의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각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문약이다.

다섯째, 국제조세문제는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국가간에 발생하

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상대국의 언어나 세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상대국의 종교·가치관·관습에 대한 지식까지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기업의 국제적 세무대책은 종합적이고 총체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2.2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 (1) 직접세액 공제제도

직접세액 공제는 미국시민, 미국법인 및 거주자 외국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미국거주자로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을 직접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로써 납세자는 동일 소득에 대해서 단 한번만 과세를 받게 되는데, 미국소득세와 국외 원천소득세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2) 간접세액 공제제도-미국세법 중심으로

간접세액 공제제도는 미국 법인이 외국법인(지배관계에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후소득(income after tax)이므로 외국에서 소득을 처분할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반면에, 동 소득을 미국 주주에게 배당소득의 형태로 처분할 경우에는, 미국 법인의 총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과세상 형평을 잃는 점을 고려해서 배당소득이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동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 소득세액을 적용한 세액만큼 미국인 주주가 외국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인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 2.3 Treaty Shopping

treaty shopping(조세조약의 맹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이란 양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조세혜택을 실제로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제3국의 거주자(개인, 법인)가 주소를 옮긴다던가 또는 법적 실체를 설치해서 당초 이중과세 협약이 목적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조세혜택을 보는 것을 말

한다.

## 2.4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이전 가격의 조작은 국내 관련기업간에도 나타나는 것이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의 인위적 조작이다. 따라서 국제조세 목적상 이전가격의 조작(transfer pricing)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단과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주로 선진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선고소득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이를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산징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한 조세부담 최소화정책은 자회사 운영관리상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다국적기업은 각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분석·관리하게 되는데, 사내 이전가격정책 때문에 개별 자회사의 진실한 경영성과를 알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보고서를 세무당국용과 관리용으로 구분·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 3. 다국적기업의 세무계획에대한 규제

### 3.1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액(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본국에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한 없이 공제토록 할 경우에는 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소득세를 잠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세자의 동 외국 원천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본국에서 과세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액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초과 외국납부세액은 순전히 납세자의 국외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울 수 있게 된다.

### 3.2 Treaty Shopping 규제조치

#### (1) OECD 모델 협약 상의 규제 규정

① 도관기업이 조세협약상 인으로 볼 수 없는 파트너쉽 또는 trust일 경우에는, 법률상 '인'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② 당해 도관기업이, 도관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해서, 조세협약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요건 즉 거주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③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및 권리가 당해 도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다만 도관기업은 그러한 소득을 지급받는 수령자로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일종의 paper company임) 등이다.

#### (2) 조세협약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조세회피방지 규정

① 경과세국에 대한 조세협약 정책

② 도관기업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방법

#### (3) 거주자 증명제도와 실질적 수익자 개념을 통한 규제

도관회사로 하여금 treaty shopping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거주자 증명제도는 원천지국에서 조세협약상 감면 조치를 하기 전에 원천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도관기업을 이용해서 조세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3.3 이전가격 과세제도

#### (1) 조세조약

조세조약에서는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예외없이 두고 있다. (OECD모델협약 제9조, "특수관계기업"참조).

#### (2) 한 국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이전가격세제

을 포함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상세하고 정교하지 못하였으며, 운영 주변에 있어서도 내국법인(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자(자회사)간 국제거래(outbound case)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계 투자법인(국내 자회사)과 국외특수관계자(외국 모회사)간 국제거래(inbound case)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세제상·운영상의 문제점을 국제수준에 걸맞도록 보완하여 단임체계화한 것이 1995년 12월 제정·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에 규정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3) 미 제

1994년 7월 미국은 이전가격세제 시행규칙의 최종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1993년에 발표된 임시 규칙에 대한 자국기업, 외국인 지배기업(foreign controlled corporations), 외국정부 등 각계의 반응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그 기초는 1993년 임시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93년의 임시 시행 규칙은 1968년에 제정된 이전가격세제 관련조항인 IRC(Internal Revenue Code) 세482조에 대한 1992년 재무성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었다.

## 4. 세무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 4.1 외국 납부세액 공제한도액과 다국적기업의 내용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신약으로 부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거래를 구성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4.2 Treaty Shopping 규제조치의 맹점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기존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treaty shopping 면에서 특히 대처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납세자가 stepping-stone 전략을 쓰는 경우인데, stepping-stone 전략에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협약 규정이 복잡해지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국과 세당국은 treaty-shopping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협약 규정의 개정이라는 절차를 밟기 보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체약국의 국내법의 대응조치로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즉 각국 내국세법에는 법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방국의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에 따라서 조세협약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국제법(조세협약)과 국내법과의 법적 우위관계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나라마다 다른 실정이다.

#### 4.3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대책

##### (1) 비교가능성에 관한 철저한 자료 수집

자료준비(documentation)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비교가능한 기업과 비교가능한 거래를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이 합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IRS가 납세자가 선정한 비교가능 거래외에 다른 비교가능 거래를 선택하거나, 납세자가 선정한 비교가능 거래에 대하여 그 합리성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꾸준히 비교가능기업 및 거래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교가능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정상거래가격범위(arm's length range)구간을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다.

##### (2) 반덤핑 관세 대응자료와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일치

한국계 미국 진출기업이 한국의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생기는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외에 관세청과는 anti-dumping문제 즉, 수입가격의 적정성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 관련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nti-dumping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응자료와도 일관성을 갖도록 관리하여 자료준비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3) 이전가격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규정의 활용

## 5. 결 론

첫째,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이종과세문제를 털어주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기주자로서 전세계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종과세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조세부담면에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국에서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제한없이 공제해줄 경우, 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할 소득까지 감식한 우리가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조세전략으로 무각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국적기업은 고세율을 적용받은 국외 원천소득은 부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외국 원천소득과 합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된다.

둘째, 다국적기업은 각국간의 교류촉진과 이에따라 발생한 상호간의 이종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그러한 혜택을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긴다면가 또는 법적실체(도관회사, 위장회사)를 신치해서 당초 이종과세 협약이 목적한 바와 다른 조세상의 혜택을 보는 Treaty Shopping을 사용한다. 이러한 Treaty Shopping은 소득원천지국에 세속의 원칙을 초래시키고, 국제적 자본흐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에대한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OECD모델 협약상에 도관기업의 조세혜택을 볼수 없는 명문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관기업에게 조세감면혜택을 국가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협약상 감면조치를 하기전에 원천소득을 수령하는 사가 상대주의 거주자임을 증명 받도록 하여 다국적기업이 도관기업을 이용해서 조세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처하여 여러단계의 도관회사를 신치하는 Stepping Stone전략을 이용한다면, 관계협약이나 과세관청이 규제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게 되므로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외국에 이전시키는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 과세당국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가격(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우선 정상가격의 범위를 넓게 만들어, 이전가격과의 차 이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비교가능 기업과 비교가능 거래를 선정하여 그 선정의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해야 한다.

국제기업간의 경쟁면에서 보면 진출국과 세당국의 규제조치가 존재하더라도 국제기업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적절히 관리한다면 기업간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거대다국적기업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계기업은 해외진출시에 각국가의 조세제도를 깊이 연구하여 신축적인 조세계획과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1. 국세청, 「미국진출기업을 위한 납세안내」, 1992. 11.
2. 노택환,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론」, 학문사, 1991.
3. 산동회계법인, 「미국조세 세미나 자료: 482조 시행령 개정안」, 1992.
4. 양동표, 「미국의 세제」, Delloitte Haskins + Sells, 1987. 6.
5. 조동성, 「한국의 종합무역상사」, 법문사, 1988.
6. 최재건,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세무대책」, 연세대학 경영대학원, 1992.
7. 김영생, 「외국환 관리법」, 무역경영사, 1992.
8.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통상관련법」, 1989. 9.
9. 한국무역협회, 「한국기업의 대미진출 확대방안」, 1992. 3.
10. 김정택외 2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과 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세무대학, 1986.

11. 한국조세 연구원, 「최근의 경제, 재정동향과 OECD재국의 세계적 추이」, 세계  
만전심의위원회 자료, 1994. 12.
12. 이원상, 「금융상황학」, 박영사, 1997.
13. 한승수, 「신 경제정책론」, 한국출판급고, 1996.
14. 이장우, 「경영전략론」, 법문사, 1995.
15. 성윤오, 「자산재평가의 세금효과와 최적설치점」,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1997, pp.355~386.
16. 강호상·성용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기업 매수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1996.
17. 이장호, 「전략적 선택과 국제경영이 기업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영학회, 경영학연구, 1987.
18. 최생립, 「기업의 국제화와 조세체계의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95.
19. 이용섭,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2.
20. 국세청, 「기업의 해외 활동과 세무」, 1993.
21. 삼일회계법인, 「한국기업이 당면한 현행 미국세법상의 문제점과 대응책 고  
찰」, 삼일저널, 여름호, 1994.
22. 정구현, 「국제경영학」, 법문사, 1996.
23. 정한구, 「재무관리」, 경문사, 1996.
24. 한글무역협회, 「한국경제의 주요지표」, 각년호.
25.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상장기업 재무총람」, 각년호.
2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27. 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장」, 각년호.
28. 최생립, 「국제재무관리론」, 법문사, 1995.

## II. 해외문화

1. Howard Curtis Reed, 「Appraising corporate Investment center : A  
Financial center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1980s」 ed, C. Kivleberger (MIT Press).
2. Mark Casson, 「Multinationals and World Trade」, London : Allen &  
Unwin, 1986.

3. I.M.F , 「Tax Policy and Reform for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ax Policy Division, 1992.
4. Barber, Hoyt L. , 「Tax Havens」, McGraw-Hill, 1993.
5. Picciotto, Sol, 「International Business Taxation」, Quorum, 1992.
6. Robock and Simmon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rnational Edition, 1993.
7. 「IRS Positions, 1986~1990.」, C.C.H.
8. Michael I. Saltzman, 「IRS Precedural Forms & Analysis.」, Warren & Lamont, 1992.
9. Reuven S. Avi-Yonah, 「Slicing the Shadow : A Proposal for Updating U. S. International Taxation.」, Tax Notes Special Report, 1993. 3. 15.
10. 「1990 Guide book to NewYork Taxes.」, C.C.H. 1991.
11. 「1990 Guide book to California Taxes.」, C.C.H. 1991.
12. 「1989 and 1990 Guide book to New Jersey Taxes.」, C.C.H. 1991.
13. 「Canada Income Tax Guide.」, C.C.H. 1991.
14. 「1992 Canadian Master Tax Guide.」, C.C.H. 1991.
15. Deloitte and Touche, 「Transfer Pricing Seminar.」, 1993. 3.
16. K.P.M. G Peat Marwick, 「U. S. Tax Seminar: Foreign Owned Company Reporting Requirements and IRS Tax Audits.」, 1991. 4.
17. Frisch D. J and T. Horst, 「Bausch and Lomb and the White Paper.」, Tax Notes , 1989. 5. 8.
18. Levey M. M and S. C. Ruchehnan, 「Section 482-the Super Royalty Provisions Adopt the Commensurate Standard.」, Tax Lawyer 41, 1988(No. 611).
19. Shapiro, A. C., 「Multinational Finance Management.」, 3rd ed. Needham Heights, 1989.
20. Lester, David S. and R.N. McCauley, 「Making Sense of the Profits of Foreign Firms in the U.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Summer-Fall 1994.
21. Nobes, C.W., 「Imputation Systems of Corporation Tax within the EEC, in D.R. Lessard(ed.),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Theory and Application, 2nd ed.」, John Wiley & Sons, 1985.